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 의 법령 상 근거 명확 화 를
위 한 4 개 법령 의 일부 개 정 에 관 한
대 통 령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여 그 법령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제26조제4항 관련)”을 “(제26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제2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나목1) 중 “회계기준”을 “회계 정리”로 하고,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 정리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류에 한정하여 오류발생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

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4조(「통계법 시행령」의 개정)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계청장은 국가통계의 발전 또는 연구·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등록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통계의 발전 또는 연구·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통계의 발전 또는 연구·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①· 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①·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 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① ----- ----- ----- --.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통계청장은 국가통계의 발전 또는 연구·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등록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u>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통계의 발전 또는 연구·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수수료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u>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
공) ① (생 략)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신 설>

제한다.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
공)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illegible]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통계의 발전 또는 연구·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

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등록
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
다.